

# 2023년도 제2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3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0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245건(안건번호 제2023-143654호~14647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43654호~143655호(순번 1번~2번)는 ☒☒☒☒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질의글의 게시자는 유료로 판매중인 악보의 전체 분량을 게시한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 타당성이 인정되나, 심의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3-143656호~143677호(순번 3번~24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43678호~143694호(순번 25번~41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43695호~143745호(순번 42번~92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43746호(순번 93번)는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43747호~143757호(순번 94번~104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5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37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18125호~1850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376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최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0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 내지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2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 질의글에서 악보를 전송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1번 및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 주면서)순번 1번~2번은 모두 ●●●● ●●●● 질의글에서 악보를 제공 중인 사안으로, 종이로 출력된 악보 전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jpeg.)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악보들은 합법사이트의 워터마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법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대규모·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도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를 부결하여 왔으므로 악보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악보가 음표의 형태로 음악저작물의 내용을 표현하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악보를 그대로 스캔하거나 채보하여 복제·전송하게 되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함.  
정리하면 순번 1번~2번은 합법 사이트에서 현재 판매중인 악보의 전체 분량을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악보 사안 관련하여 다른 분과에서 논의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 김민영 주임: 제2023-205회(2023. 8. 14.,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  
♪ ♪♪♪의 답변글에 전체 또는 일부 분량의 악보가 게시된 사안에  
대해, 합법 시장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그 시장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권리자의 신고도 없는 상태  
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 전체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바 있음.
- A 위원: 악보 사안은 단순 이용인지, 배타적 권리를 받은 것인지 등  
악보 출판 권리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C 위원: 순번 1번~2번은 유료로 판매중인 악보의 전부를 게시하고  
있으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이고,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  
견이었으나,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니 악보 사안에 대하여 권리관  
계를 살펴 심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전체위원회에 회부 의견  
임.
- A, B, D, E 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순번 1번~2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  
원회 회부하기로 결정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24  
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  
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



안임. 총 32개 게시물임.

(순번 3번 및 2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함.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시되어 있어,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므로,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하고 이를 허락없이 하였을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함. 현장공연의 녹음·녹화 파일,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영상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의 복제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3번 내지 24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2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번 내지 4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0건임.  
(순번 39번 및 4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순번 25번~41번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4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

번~9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09개 게시물임.

(순번 57번 및 9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본 사안의 경우 불법복제 기기에 해당하는데,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 김민영 주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등"이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B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2번~9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만화를 소개 또는 리뷰하는 블로그 게시물 총 2건임.

(순번 9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감상,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며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은 특정 부분(특정 캐릭터,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전체를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화의 일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화에 대해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인용으로서 공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적어도 원저작물 자체를 대체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93번은 저작권법상 인용 또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3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4번~104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방송물, 만화저작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27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94번 내지 104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4번~10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05번~282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05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105번~282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5번~282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43654호~143655호(순번 1번~2번)는 전체위원회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656호~143677호(순번 3번~2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678호~143694호(순번 25번~4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695호~143745호(순번 42번~9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746호(순번 9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747호~143757호(순번 94번~10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43758호~146474호(순번 105번~282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7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125호~18500호(순번 1번~376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2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6.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